다음은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다. 忠淸北道學生會館設置및使用에관한條例案

1. 提案理由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忠淸北道學生會館設置및使用에관한條例'를 제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가. 청소년 문예활동의 공간과 공연장(연극, 영화, 음악등)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활동 등을 장려하고 인격도야를 위한 도서실을 운영함.

나. 조직으로 관장, 총무과, 운영과, 도서과를 두며,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함.

다. 학생회관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하되 會館의 設立目的에 상응하거나 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使用料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라. 忠淸北道學生會館은 忠淸北道學生圖書館을 흡수 통합하고 그의 권리, 의무 및 소속공무원을 승계함.

3. 提案根據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나. 교육부 교행 01210-335(1991. 9. 6)로 교육기관설치 승인

이상으로 提案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우선 잠시 말씀 드릴것은 지금 狀況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原則的으로는 忠淸北道 農業系 高等學校 農業機械 공동실습소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忠淸北道 학생회관 設置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한다음 忠淸北道 圖書館 설치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檢討報告를 말씀 드리겠습니다.